

—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—
—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,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과대·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·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
- 또한, 통리반 증설에 따른 통리장 정수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통리반 조정 : 22개통 145개 반 증설
 - 통·리 : 538개 통리(통371, 리167) ⇒ 560개 통리(통371, 리167)
 - 반 : 3,752개반 ⇒ 3,897개반
 - ※ 통 증설(22개통) : 송정(1), 도량(2), 형곡1(5), 사곡상모(3), 인동(11)
- 통리장 정수 조정 : 22명 증가(통장)
 - 통장 정수 : 현행 371명 ⇒ 393명(22명 증가)
 - 리장 정수 : 현행 167명 ⇒ 167명(변동없음)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44조
-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
-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

5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의거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통리반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,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임.
- 택지개발 사업지구인 도량, 사곡·상모, 인동지구와 형곡, 송정지구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송정동 1개통, 도량동 2개통, 형곡1동 5개통, 사곡·상모 3개통, 인동동 11개통 등 총 22개통 증설과 함께 이와 관련된 145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또한, 통 증설에 따른 통장 정수를 22명을 증원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